

# 적극행정 우수사례 3

## 국내·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

1

금융위원회 2022년 적극행정 3

#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는 다양하게!

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

2

금융위원회 2022년 적극행정

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

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)는  
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 
**국내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**할 수  
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소수단위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 
주식거래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

3

금융위원회 2022년 적극행정

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

신규 8개 증권사가 **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**를  
개시하고 **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도**  
제공되고 있습니다! (2022년 9월부터)

- ✓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저변 및 수요기반은 더욱 확대
- ✓ 증권사는 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기획가능
- ✓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화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
- ✓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가능

4

금융위원회 2022년 적극행정

국내외 상장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

*★ 적극행정,  
이렇게 진행했습니다!*

- 약 1년 여 기간동안 법무부, 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
- 법률전문가(교수, 변호사)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금융혁신 특별법에 따른 "금융규제 샌드박스" 제도를 적극 활용